

의안번호	2208465
의 퇴 인	문진석 의원
회 답 일	2025.3.25.
추계번호	25E117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,030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5,599억원(연평균 1,1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4,18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,417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(제105조제1항)	-1,030	-1,073	-1,118	-1,165	-1,213	-5,599	-1,120
- 국세(74.7%)	-770	-802	-835	-870	-906	-4,183	-837
- 지방소비세(25.3%)	-261	-272	-283	-295	-307	-1,417	-28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제1항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위탁받아 공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5조제1항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6~2030년까지로 설정
- 세수효과는 ‘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 공급가액 × 세율 10%’로 추계
- 2024년 이후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 공급가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용역 수탁에 따른 공급가액 증가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 - 한국철도공사는 신설선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 및 노후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시설유지보수 위·수탁계약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

- (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)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위임하고,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
 -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는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8조1)에 따라 철도공사

1)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

에서 담당

- (유지보수 위·수탁 대상) 일반철도, 고속철도, 진접선, GTX-A(수서~동탄)의 선로 (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포함), 건축물, 전철전력, 신호, 정보통신, 철도교통관제시설 등

[그림 1]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 위·수탁 구조



자료: 한국철도공사

나. 추계 방법 및 결과

- (공급가액) 2019~2023년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고,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.2%임

[표 2] 2019~2023년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 공급가액

						(단위: 억원)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공급가액	7,739	8,578	8,135	8,531	9,114	4.2%

자료: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,030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5,599억원(연평균 1,1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추계기간 동안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예상 공급가액(2023년 공급가액에 연평균 증가율 4.2%씩 적용)에 세율 10% 적용

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·국가철도공단·철도공사·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.
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4,18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,417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,030	-1,073	-1,118	-1,165	-1,213	-5,599	-1,120
- 국세(74.7%)	-770	-802	-835	-870	-906	-4,183	-837
- 지방소비세(25.3%)	-261	-272	-283	-295	-307	-1,417	-28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